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52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(개방형직위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8일

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직위	임용직급	인원	담당업무
송 파 구 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 (개방형4호)	1명	▪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▪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보건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▪ 의료인 및 의료기관, 의료기사·보건의료정보관리사·안경사에 대한 지도 ▪ 약사 및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▪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▪ 급성·만성 감염병의 예방·관리 ▪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유지·증진에 관한 사항 ▪ 정신건강증진,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▪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▪ 가정,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

○ **임용기간: 임용일로부터 2년**

※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○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

○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○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
○ 지역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보건소장)

3. 응시 자격요건

○ **공통 응시 자격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「**지방공무원법**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**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가.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마·바.삭제
사.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아.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자.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**응시자격 요건**: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기준일: 면접시행 예정일)

구 분		자격요건
필수요건		○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(지역보건법 제15조)
경력요건	관련학과 학력기준	**<박사학위 소지자>** 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**<석사학위 이하 소지자>** 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자격증 기 준	○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
구 분		자격요건
경력 요건	공무원 경력기준	○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민간경력 기 준	○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관련분야 범위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

※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, 경력요건은 해당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

4. 임용 신분

○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·승진·전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
○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

5. 보수 수준

○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,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,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각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의 **하한액의 130% 범위**에서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
【참고】 2026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[별표 13]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개방형4호	-	70,490	-

○ 수당: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및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)

※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**연봉하한액의 130%범위(91,637천원)**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·능력·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

6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10.12. ~ 10.16.(5일) 〈09:00~18:00〉

 ※ 주말·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
 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

- 접수장소: 송파구청 총무과 인사팀(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, 본관 3층)

 ※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(**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**)까지 유효함

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 ※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 ※ 등기우편 접수 시 10,000원 상당의 우편통상환(우체국 판매) 동봉

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2026. 9. 28. ~ 10. 8.	구 홈페이지 공고
응시원서 접수	2026.10.12. ~ 10.16.	방문 및 우편(등기)접수
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	2026.10.20. 예정	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	2026.10.22. 예정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
면접합격자 발표	2026.10.27. 예정	개별통보
최종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	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시험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 능력, 조직관리 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7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원서에는 응시 수수료(10,000원) 송파구 수입증지 부착(구청2층 민원행정과 1번창구)

※ 원서접수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http://www.nhis.or.kr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 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
○ 서류전형자격요건 서식(본인의견서)(첨부 5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6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7) 1부

○ 임용 관련 분야 면허(의사) 사본(원본 지참) 1부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 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근무 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※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 분야 응시 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〔첨부8〕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
○ 주민등록표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연구논문 요약서, 연구실적 목록, 기타 실적관련 자료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공무원 인사기록카드(공무원에 한함) 1부

○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(별도서식 없음) 1부 (공무원에 한함)

▹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

▹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
▹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▹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
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8. 기타(유의)사항

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,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.

○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
○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
○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○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
❍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❍ 공무원연금법 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)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

❍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❍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
❍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총무과(☎ 02-2147-21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